

---

# 도 시 국

---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도시계획과**





# 풍곡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용역 (P-189)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09월 ~ 2021년 12월      ○ 위    치 :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일원
- 사업규모 : 도시계획도로(L=840m), 지구단위계획도로(L=415m)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풍곡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연결되는 도로계획을 형성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2,000				22,000	22,000	
국 비								
도 비								
시 비		22,000				22,000	22,0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풍곡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풍곡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연결된 도로계획을 형성하고자 함.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제2항
근거내용	개발제한구역은 법 제3조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하되, 도시의 자족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type="checkbox"/>	자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type="checkbox"/>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풍곡도시계획도로가 인접 취락지구와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주민의 불만이 있음.
- 주민지원사업의 특성상 풍곡도시계획도로의 계속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연결되는 도로계획이 필요함.
- 풍곡도시계획도로(소2-105호, 소2-106호)의 관리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이 필요함.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김포시 북변동 공영주차장 일대는 매월 2, 7, 12, 17, 22, 27일 마다 열리는 5일장을 찾는 사람들과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붐비는 지역이지만,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5일장을 이용하는 방문객과 버스터미널 등을 이용하는 시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 데크, 벤치, 야간조명 등 주민을 위한 쉼터 조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	401-01 시설비	◎ 김포5일장 쉼터 조성 = 70,000	
		· 데크바닥 포장 450,000원 * 80㎡ = 36,000	
		· 야외용 벤치 700,000원 * 10개 = 7,000	
		· 야외용 테이블 1,000,000원 * 3개 = 3,000	
		· 야간조명 20,000,000원 * 1식 = 20,000	
		· 사인물 2,500,000원 * 1식 = 2,500	
		· 실시설계비 1,500,000원 * 1식 = 1,5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G)	기투자 (A)	2020년 예산액					향후투자 (G)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0,000		70,000				70,000		
공정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70,000		70,000			70,000		
	감리비								
	부대비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0.09. : 공사 계약 및 착공
  - 2020.10. : 설치공사 완료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신규사업으로 해당없음**

□ 위치도 및 현장사진(해당없을시 미제출)

<p><b>위치도</b> 10,000 : 1 <b>이상</b> (칼라)</p>	
<p><b>현장사진</b> (칼라)</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장 구시문	담당자	시설9급 정은혜	전화	2380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사업대상지 일대에 조성된 녹지공간의 특성과 이용자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대상지에 최적화된 휴게 공간을 계획함으로써 김포 신도시 품격에 맞는 ‘쉼터’ 조성
- 데크, 벤치, 야간조명 등 주민을 위한 쉼터 조성.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	401-01 시설비	◎ 도심속 녹지공간 활용 쉼터 조성 = 70,000	
		· 데크바닥 포장 450,000원 * 80㎡ = 36,000	
		· 야외용 벤치 700,000원 * 10개 = 7,000	
		· 야외용 테이블 1,000,000원 * 3개 = 3,000	
		· 야간조명 20,000,000원 * 1식 = 20,000	
		· 기타 2,500,000원 * 1식 = 2,500	
		· 실시설계비 1,500,000원 * 1식 = 1,500	

**□ 투자사업 추진계획**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A+B+G)	기투자 (A)	2020년 예산액				향후투자 (G)	비고
			계 (B+C+D)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70,000		70,000			70,000		
공정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70,000		70,000			70,000	
	감리비							
	부대비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0.09. : 공사 계약 및 착공
  - 2020.10. : 설치공사 완료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신규사업으로 해당없음**

□ 위치도 및 현장사진(해당없을시 미제출)

<p><b>위치도</b> <b>10,000 :1</b> <b>이상</b> <b>(칼라)</b></p>	
<p><b>현장사진</b> <b>(칼라)</b></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장 구시문	담당자	시설9급 정은혜	전화	2380
-----	-------	-------------	-----	----------	----	------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도시관리과**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P-19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연계사업 발굴 유치를 통한 도시재생 기반강화, 도시재생대학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확산 및 주민 성장지원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b>계</b>	<b>0</b>	<b>40,828</b>		<b>34,148</b>		<b>6,680</b>	<b>40,828</b>	
국 비	-							
도 비	-							
시 비	-	40,828		34,148		6,680		
기 타	-							

## □ 예산 증감사유

- 김포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센터 고유 사업비 반영 필요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문단 운영, 주민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 공감 확산을 위한 사업 홍보 및 시민참여 기회 확대 등 사업비 반영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근거내용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센터 개소 및 운영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 센터 개소 후 도시재생대학을 포함해 사업의 추진 기반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할 필요 있음.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총 계	6,680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합 계	2,500	
		· 자문단 운영		
		- 자문수당: 100,000원*5명*3회 = 1,500		
			· 홍보물 제작 : 5,000원*200개 = 1,000	
	201-03 행사운영비	합 계	860	
		·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 웹자보 : 200,000원*1회 = 200		
		- 현수막 및 배너 : 300,000원 = 300		
			- 심사수당(발표) : 60,000원*2시간*3명 = 360	
	301-09 행사실비 지원금	합 계	120	
· 자문단운영 급식비 : 8,000원*5명*3회 = 120				
301-12 기타보상금	합 계	3,200		
	·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 대 상 : 1,000,000원*1팀 = 1,000			
	- 우수상 : 500,000원*2팀 = 1,000			
		- 장려상 : 300,000원*4팀 = 1,20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6.25. :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 2020.06~2020.07 : 추진계획수립
- 2020.09~2020.12 : 사업집행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2019년	-	
2020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경기도 맞춤형 지원사업 2개 지역(서암리, 갈산리) 선정	7.15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	-	-	-	
2019년	-	-	-	-	
2020년	34,148	10,984	-		7.15일 기준 실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관리과	도시재생팀장 최태수	담당자	시간선택임가제 다급 장희진	전화	5510
-----	-------	------------	-----	----------------	----	------

# (맞춤형정비사업 계획수립) (P-19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1
- 총사업비 : 210,000천원
- 위 치
  -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420-15번지 일원 /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520-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정비사업 계획수립(집행(계약 및 지출)시기 : 11월)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맞춤형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원, 낙후한 주거환경 정비 및 상권 활성화, 지역정체성 회복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b>계</b>	-	<b>210,000</b>	-	-	-	<b>210,000</b>	<b>210,000</b>	
국 비	-	-	-	-	-	-	-	
도 비	-	40,000	-	-	-	40,000	40,000	
시 비	-	170,000	-	-	-	170,000	170,000	
기 타	-	-	-	-	-	-	-	

## □ 예산 증감사유

- 국가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 선정
- 2020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선정에 따른 계획수립비 시비 매칭 지원(도비: 각 20,000천원)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지원 조례(법.시행령,시행규칙)	제6조~제8조
근거내용	제6조(공모계획 수립·공고) 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정비사업의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모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신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제6조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대상) 정비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으로 한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 및 존치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구역의 소유자 50%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 수복형 주거재생이 필요한 사업지역 등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연·출자회의의결
신규사업■	계속사업□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접경지역, 새뜰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취약지역, 낙후지역, 생활여건 개선
- 김포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 주변지역 택지개발로 인한 공동화와 이주민과의 단절 현상 극복 필요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맞춤형정비사업 (통진읍 서암리)	401-01 시설비	합 계	120,000	사업면적 70,000㎡
		· 조사비	= 11,750	
		· 인건비	= 51,000	
		· 보험료	= 626	
		· 제경비	= 32,000	
		· 기술료	= 15,320	
		· 기타	= 9,304	
맞춤형정비사업 (월곶면 갈산리)	401-01 시설비	합 계	90,000	사업면적 42,500㎡
		· 조사비	= 9,000	
		· 인건비	= 44,000	
		· 보험료	= 511	
		· 제경비	= 24,000	
		· 기술료	= 11,400	
		· 기타	= 1,089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5.29. :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공모지원신청(시→도)
- 2020.06.19. :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현장평가
- 2020.06.26. :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선정(월곶, 통진 각 20백만원)
- 2020.07.01. : 보조금 자금 교부 결정
- 2020.09. : 맞춤형정비사업 용역 예산 확보(2020년 3회추경)
- 2020.10. : 계약심사
- 2020.11. : 용역착수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관리과	도시재생팀장 최태수	담당자	행정9급 정주하	전화	5516
-----	-------	------------	-----	----------	----	------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주 택 과**





#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 (P-193)

## □ 지방보조사업 개요(사업비)

- 사업기간 : 2020. 1. ~ 12.(연중)
- 공모여부 : 공모
- 보조사업자 : 공동주택 220개 단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노후 공용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2회 추경 (D)		
계	420,000	430,000	450,000	-20,000	-10,000	
시 비	420,000	430,000	450,000	-20,000	-10,000	

## □ 예산 증감사유

- 2020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모범상생관리단지) 미신청(500세대 미만 단지)에 따른 감액
- 신청기간 : 2020.06.29. ~ 2020.08.11.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근거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의 개·보수 사업으로 단지 내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 등)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 노후 공용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계	시비	자부담	
총 계		430,000	430,000		
합 계		430,000	430,000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 관내 공동주택단지 중 시설개보수 대상단지 지원			
		- 500세대 미만 단지 : 각 20,000천원 × 11개 단지	400,000	400,000	
		- 500세대 이상 단지 : 각 30,000천원 × 6개 단지			
		· 의무관리대상 단지 중 모범상생관리 단지 1개 단지 지원	30,000	30,000	
		- 500세대 이상 단지 : 30,000천원 × 1개 단지			
					430,000 (△2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자 : 오룡마을 한화아파트 외 23개 단지</li> <li>○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부대·복리시설 개·보수 사업</li> <li>- 일 시 : 2017. 3. ~ 12.</li> <li>- 사업내용 : 지하주차장 LED 교체,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승강기 리모델링, 아스콘 포장, 가로등 교체, 녹화장치 교체 및 CCTV추가, 소방펌프 및 데크 교체,</li> </ul> </li> </ul>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자 : 풍무 삼용아파트 외 16개 단지</li> <li>○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부대·복리시설 개·보수 사업</li> <li>- 일 시 : 2018. 3. ~ 12.</li> <li>- 사업내용 : CCTV 교체 및 증설, 지하주차장 LED 교체, 아스콘 포장, 차도블록 교체, 담장보수 등</li> </ul> </li> </ul>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자 : 고촌 길훈1차 외 18개 단지</li> <li>○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부대·복리시설 개·보수 사업</li> <li>- 일 시 : 2019. 1. ~ 12.</li> <li>- 사업내용 : 노후 저수조 및 급수펌프 개선, CCTV 증설·교체, 옥상방수 및 외벽균열 보수, 아스콘 포장, 보도블록 교체, 지하주차장 램프 지붕설치 등</li> </ul> </li> </ul>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17년	1,562,873	300,000	1,262,873	1,424,226	281,687	1,142,539	138,647	18,313	120,334	
2018년	1,168,532	400,000	768,532	768,532	322,957.2	534,265.6	311,309.2	77,042.8	234,266.4	
2019년	1,338,984	420,000	918,984	918,984	414,444.5	835,148	83,391.5	5,555.5	83,836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장 황석환	담당자	시설7급 강미숙	전화	2404
-----	-----	--------------	-----	----------	----	------

#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전기요금 지원) (P-193)

## □ 지방보조사업 개요(운영비)

- 사업기간 : 2020. 1. ~ 12.(연중)
- 공모여부 : 비공모
- 보조사업자 : 영구임대주택 등 18개 단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관내 영구임대주택 등 18개소의 공동전기 요금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복지 증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20년 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2회 추경 (D)		
계	64,800	54,800	64,800	-10,000	-10,000	
시 비	64,800	54,800	64,800	-10,000	-10,000	

## □ 예산 증감사유

- 상반기 집행결과 잔액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감액
  - 한국전력공사에서 이전달 전기사용료를 다음달에 해당 아파트단지로 전기요금고지서를 발부하는 사항으로써 (12월분 전기사용료가 다음연도 1월 고지서로 발부됨)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 사업비를 감액 조정.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근거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기여.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합	계	시비	자부담	
영구임대 주택 등 공동전기 요금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합				54,800 (△10,000)
		·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253,700원 × 18개 단지 × 12개월	54,800	54,8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보조사업자 : 초당마을 주공암대아파트 외 17개 단지 ○ 추진실적 : 공동전기요금 지원 (01. ~ 12.)	
2019년	○ 보조사업자 : 초당마을 주공암대아파트 외 17개 단지 ○ 추진실적 : 공동전기요금 지원 (01. ~ 12.)	
2020년	○ 보조사업자 : 초당마을 주공암대아파트 외 17개 단지 ○ 추진실적 : 공동전기요금 지원 (01. ~ 7.)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월 평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17년	16,200	16,200	-	12,474	12,474	-	3,726	3,726	-	4,158
2018년	64,800	64,800	-	49,784	49,784	-	15,016	15,016	-	4,149
2019년	64,800	64,800	-	50,151	50,151	-	14,649	14,649	-	4,179
2020년 7월말	64,800	64,800	-	30,129	30,129	-	34,671	34,671	-	4,304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장 황석환	담당자	시설9급 이창훈	전화	2537
-----	-----	--------------	-----	----------	----	------

#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위탁) (P-19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 ~ 11.
- 사업규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67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을 통해 관련 종사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 도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000	0	10,000			-10,000	-8,000	
시 비	8,000	0	10,000			-10,000	-8,000	

## □ 예산 증감사유

-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2020년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교육에 대한 **집합교육은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우리시와 위·수탁 계약 중인 LH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같음하여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공동주택 관리법	제85조
근거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관련 종사자의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강화 도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기여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 고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위탁	307-12 민간인위탁교육비	· 윤리교육 및 소방·방법 교육 × 2회	
		- 강사료·여비 : 280,000 × 4인	= -1,120
		- 교재 제작비 : 8,000 × 400부	= -3,200
		- 현수막·배너 제작비 : 100,000 × 2개	= -200
		- 교육진행 인건비 : 129,000 × 2명	= -258
		- 일반관리비 : (강사료+교재비+기타) × 6%	= -117
			0 (△10,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07. : `20년 교육(온라인교육) 변경계획 결정
- 2020. 07. ~ : `20년 교육(온라인교육) 계획 홍보 (관내 의무관리대상 167개 공동주택 단지)
- 2020. 12. : `20년 교육(온라인교육)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일시 : 10.23.</li> <li>○ 교육대상 : 시설물안전관리 및 경비책임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li> <li>○ 참석인원 : 소방교육 68명, 방법교육 63명,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등 190명</li> </ul>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일시 : 06.05., 11.20.</li> <li>○ 교육대상 : 시설물안전관리 및 경비책임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li> <li>○ 참석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 : 소방교육 84명, 방법교육 77명,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등 225명</li> <li>- 하반기 : 소방교육 62명, 방법교육 54명,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등 155명</li> </ul> </li> </ul>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법정교육(집합교육) 추진불가</li> </ul>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4,650	4,543	-	107	
2019년	8,000	7,495	-	505	
2020년	10,000	0	-	10,000	추진불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장 황석환	담당자	시설7급 허은정	전화	2405
-----	-----	--------------	-----	----------	----	------

#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P-19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연중)
- 사업규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67개 단지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7,300	63,000	78,000			-15,000	-14,300	
시 비	77,300	63,000	78,000			-15,000	-14,300	

## □ 예산 증감사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회의 등의 자제 권고 등 조치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접 출장조사 횟수가 줄고, 관리업무 종사자와 입주자 등의 대면접촉 최소화 실시로 감사 횟수가 축소됨
- 상반기는 일부 단지를 비대면 우선 감사로 전환·실시하였고, 전문 감사관들이 관리사무소에 머물며 접촉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있음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
근거내용	·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들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들의 권익보호
- 컨설팅 감사 및 기획감사에 따른 감사사례 홍보로 감사 미실시 단지 등에도 공동주택 관리 사례 전파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비고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201-01 사무관리비	·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 전문감사관 수당 : 300천원 × 4명 × 10회 × 4일 = 48,000 - 공동주택관리 감사 운영비 : 500천원 × 10회 = 5,000 - 감사사례집 : 10,000천원(600부) × 1회 = 10,000	63,000 (△15,00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4. 10. :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관련 김포시 주택조례 개정
- 2015. 06. :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관 구성
- 2017. 09. : 공동주택감사팀 신설
- 2018. 12. : 19개 단지 감사,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제작·배포
- 2019. 12. : 35개 단지 감사, 공동주택 컨설팅 감사사례집 제작·배포
- 2020. 07. : 26개 단지 감사,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제작·배포
- 2020. 12. : 전면감사, 기획감사 등 실시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 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전면감사 5개 단지 실시 ○ 기획감사 12개 단지 실시 ○ 회계감사 “한정 의견” 단지(1개 단지) 감사 실시 ○ 경기도 합동 감사 1개 단지 실시 ○ 감사사례집 제작 배포(경기도 시군구,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2019년	○ 기획감사 8개 단지 실시 ○ 컨설팅 감사 9개 단지 실시 ○ 종합감사 4개 단지 실시 ○ 경기도 지정 감사 1개 단지 실시 ○ 민원 감사 10개 단지, 외부 회계감사 3개 단지 실시 ○ 컨설팅 감사사례집 제작 배포(경기도 시군구,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2020년	○ 전면감사 1개단지 실시 ○ 컨설팅 감사 10개 단지 실시 ○ 기획감사 13개 단지 실시 ○ 경기도 지정 감사 2개 단지 실시 ○ 감사사례집 제작 배포(경기도 시군구,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8월 현재

○ 최근 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 잔액	비고
2018년	76,920	75,677	-	1,243	
2019년	77,300	76,757	-	543	
2020년	78,000	49,154	-	28,846	8월 현재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장 박일용	담당자	시설8급 노태원	전화	2444
-----	-----	--------------	-----	----------	----	------

# (주거급여) (P-19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01월 ~ 12월(연중)
- 사업규모 : 6,000가구(예상)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향상에 기여.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706,797	13,390,226	10,527,763	-1		2,862,464	3,683,429	
국 비	7,765,437	10,712,180	8,422,210			2,289,970	2,946,743	
도 비	970,680	1,339,023	1,052,776			286,247	368,343	
시 비	970,680	1,339,023	1,052,777	-1		286,247	368,343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주거급여 수급자 증가 등 3차 변경내시 조정에 따른 증액 필요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주거급여법	제7조
근거내용	·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본 <input type="checkbox"/>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input type="checkbox"/>	보조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9.11월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2020 본예산 편성 후 주거급여 대상가구의 증가로 주거급여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여 관내 저소득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공 통		○ 단가(원)×인원(명)×개소(회)×일수(일)×비율(%)	
기초생활 임차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각 가구특성별 임차료 지급×6,000가구 = 13,249,702	13,249,702 (△2,862,464)
기초생활 수선유지급여	404-01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 기초생활 수선유지급여 = 140,524 - 대보수 : 12,410,000원×3가구×0.95 = 35,368 - 중보수 : 8,490,000원×2가구×0.95 = 16,131 - 경보수 : 4,570,000원×19가구×0.95 = 82,489 - 장애인편의시설 : 3,800,000원×8가구×0.2×0.95 = 5,776 - 고령자편의시설 : 500,000원×8가구×0.2×0.95 = 760	140,524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월평균 4,318가구(6,075명) ○ 월평균 소요예산581,216천원/가구당 급여액 156,452원 ○ 총예산 6,988,360천원 ○ 수선유지급여 21개 가구 시행	
2019년	○ 월 평균 5,233가구(7,551명) ○ 월평균 소요예산 773,018천원/가구당 급여액 170,047원 ○ 총예산 9,706,797천원 ○ 수선유지급여 23개 가구 시행	
2020년	○ 월 평균 5,713가구(8,636명) ○ 월평균 소요예산 1,106,547천원/가구당 급여액 193,689원 ○ 총예산 10,527,763천원 ○ 수선유지급여 24개 가구 시행 중(공사 완료 정산 12월 중 예정)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6,988,360	6,517,631	-	470,729	
2019년	9,706,797	9,429,795	-	277,002	
2020년(7월말 기준)	10,527,763	7,277,693	-	3,250,07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조민신	담당자	사회복지7급 서임범	전화	2416
-----	-----	------------	-----	------------	----	------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건축과**





# (창의적인 건축문화 육성) (P-195)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규모 :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연 28회 개최, 232명 참석)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건축위원회, 건축구조분야 등 전문위원회 심의 운영을 통한 창의적이고 안전한 건축 인허가 업무 추진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1,120	11,520	24,640			-13,120	-9,600	
국 비								
도 비								
시 비	21,120	11,520	24,640			-13,120	-9,600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2020년부터 경관·건축공동위원회 미운영으로 본예산 대비 감소(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분리 운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김포시 경관 조례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근거내용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근거법령	김포시 건축조례	제11조
근거내용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신설 2019.6.26> ②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서면으로 심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6.26>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경관법 제29조, 김포시 건축조례 제2조 및 제11조에 근거
- 경관·건축 위원회 분리운영, 건축계획 및 건축구조 분야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개최를 통한 건축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하여 창의적이며 내실있는 건축문화 정착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공 통		○ 단가(원)×인원(명)×회수(회) = 11,520	
창의적인 건축문화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 80,000원 * 12명 * 12회 = 11,52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01 : 제1회 건축위원회
- 2020.02 : 제1회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 2020.03 : 제2회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 2020.04 : 제2회 건축위원회, 제1회 건축계획분야 전문위원회
- 2020.05 : 제3회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제2회 건축계획분야 전문위원회
- 2020.06 : 제4회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제3회 건축위원회, 제3회 건축계획분야 전문위원회  
제1회 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제1회 한옥분야 전문위원회
- 2020.07 : 제5회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 2020.08 ~ 12. : 매월 건축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개최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경관건축위원회 참석수당 : 1,200천원 ·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 480천원 · 주택과에서 건축관리과로 조직개편(2018.3.7.)으로 업무이관 · 경관건축위원회 참석수당 : 11,240천원 ·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 2,696천원	
2019년	· 경관건축위원회 참석수당 : 15,000천원 ·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 4,560천원	
2020년	·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 3,520천원	7.15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14,400	14,080		320	주택과 예산 제외
2019년	21,120	19,560		1,560	
2020년	24,640	3,520		21,120	7.15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서진학	담당자	시설7급 정종남	전화	2398
-----	-----	------------	-----	----------	----	------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

**토지정보과**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용S/W 구입) (P-19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
- 위 치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용 S/W 구입 예산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	77,416	80,000			-2,584	77,416	
국 비								
도 비								
시 비	-	77,416	80,000			-2,584	77,416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
근거내용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장비의 증설·교체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 고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운영	201-01	=	77,416
	사무관리비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용 S/W	= 77,416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2020년 6월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용 SW 구입 완료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팀장 권효섭	담당자	시설7급 이혜영	전화	2133
-----	-------	----------	-----	----------	----	------

# (영구지적물 전산화 추진) (P-19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 ○ 위 치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사업규모 : 2017년, 2018년 측량결과도 3,240매, 2018년 토지이동결의서 32,000매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종이로 작성된 영구보존문서인 지적기록물 전산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b>계</b>	<b>20,000</b>	<b>41,083</b>	<b>47,012</b>			<b>-5,929</b>	<b>21,083</b>	
국 비								
도 비								
시 비	20,000	41,083	47,012			-5,929	21,083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반납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2항
근거내용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함. ②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함.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채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종이로 작성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결의서 등의 보존·관리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 재난 등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분·소실 시 복구자료 사전확보와 지적서고 공간활용
- 토지정보과 및 타부서의 소송 및 인허가 확인 등 업무 협조요청 시 신속한 업무처리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영구기록물 전산화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 41,083	
		- 영구지적물('17, '18년 측량결과도) : 20,687,000원 = 20,687	
		- 영구지적물('18년 토지이동 결의서) : 20,396,000원 = 20,396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년 1월 :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 계획
- 2020년 3월 :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계약 의뢰
- 2020년 9월 :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정비 검수 및 수수료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2015년 ~ 2016년 생산된 영구지적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DB로 관리함. - 측량결과도 : 2,700면(A2사이즈) - 토지이동결의서 : 59,850면 - 비법인문서 : 8,000면	
2019년	· 2017년 생산된 영구지적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DB로 관리함. - 토지이동결의서 : 28,572면(78권)	
2020년	· 2017년, 2018년 생산된 영구지적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DB로 관리함. -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54,271(2017년 이월) 66,395(2018 본예산)	54,271(2017년 이월) 59,742(2018년 본예산)		0 6,653	
2019년	20,000	18,000		2,000	
2020년	47,012	41,083		5,929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팀장 권효섭	담당자	시설7급 이해영	전화	2133
-----	-------	----------	-----	----------	----	------

# 2020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P-196)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07 ~ 12월중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음으로써 중개업 실무에 관한 사항을 재숙지하고 인지하여 중개업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	6,173	-			6,173	6,173	
국 비								
도 비	-	6,173	-			6,173	6,173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별표1)에 의거 2020.03.16.일부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이 시·군 사무로 위임되었고, 경기도 토지정보과-6765(2020.03.20.)에 의거 2020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도비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토지정보과-8080,2020.03.26.), 경기도 토지정보과-7094(2020.03.24.)에 의거 도비보조금 자금교부 결정 통지를 받아 예산을 증액하는 건임.

## □ 법적근거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제34조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1
근거내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가 의회사무처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위임 사무명 1.연수교육 실시 2.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3.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별표1)에 의거 2020.03.16.일부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이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도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사업임.
- 2020년 연수교육대상자 705명(경기도 토지정보과-6765, 2020.03.20.기준)을 대상으로 김포시 관내에 장소를 대관하고 강사를 초빙하여 연수교육 실시예정.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201-01 사무관리비	= 6,173	합계
		· 강사료 : 1,050,000원*2회 = 2,100	
		· 대관료 : 450,000원*2회 = 900	
		· 교재비 : 2200원*705명 = 1,551	
		· 우편요금 : 2299원*705명 = 1,621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0.3.16 : 「경기도 사무위임조례」공포·시행(2020.3.16.)
  - 2020.3.31 : 「2020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도비보조금 자금교부 결정 통지(2020.3.31.)
  - 2020.07~ :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 세워 추진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해당없음	
2019년		
2020년		신규사업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장 이재경	담당자	시설9급 전준규	전화	2147
-----	-------	------------	-----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201-01 사무관리비	·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 800,000원(평균단가)×63(건수)×2개기관 = 100,800 ※ 평가가액에 따라 수수료 상이로 평균적 단가 적용	증액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0.01 ~ 2020.12. 개발부담금 예정부과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 시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시)
- ※ 납부의무자의 매입가 신고 및 반영여부 결정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건수 및 금액 변동 발생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거래가격신고 93건, 감정평가 의뢰 186건,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 401,335천원 -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 13,025천원(2018.06.27. 관련 법 시행으로 2회 추경예산 요청)	
2019년	- 거래가격신고 117건, 감정평가 의뢰 234건,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 340,066천원 -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 50,067천원	
2020년	- 거래가격신고 70건, 감정평가 의뢰 140건,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 207,872천원 -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 9,637천원 ※ 7월내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본예산액(240,000천원)전액 집행 예정	7.15일까지 추진실적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433,400	414,360		19,040	
2019년	391,256	390,133		1,123	
2020년	264,550	217,509		47,041	7.15일 기준 실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장 신영균	담당자	시설7급 이은찬 시설8급 이기욱	전화	2152 2155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 1) 지역 : 김포 전 지역 2) 수량 : 200건	- (사)경일사회경영연구원 1) 지역 : 김포 학운3 일반산업단지 2) 수량 : 1건	
2019년	- (사)한양경제연구원 1) 지역 : 김포 전 지역 2) 수량 : 200건		
2020년	-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1) 지역 : 김포 전 지역 2) 수량 : 120건	- (사)경기도시개발정책연구원 1) 지역 : 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 2) 수량 : 1건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2018년	233,000	204,732		28,268	
2019년	233,100	196,845		36,255	
2020년	233,100	204,202(계약)		28,898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장 신영균	담당자	시설7급 이은찬	전화	2152
				시설8급 이기욱		2155

#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P-19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규모 : 도로구간 3,279구간(종속구간 포함)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도로명주소 홍보로 새주소 사용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개선
  - 도로명주소 사용의 활성화로 시민생활의 편리성 도모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b>계</b>	<b>480,448</b>	<b>354,090</b>	<b>336,017</b>	<b>38,073</b>	<b>10,000</b>	<b>-30,000</b>	<b>-126,358</b>	
국 비	10,000	10,000			10,000			특교세
도 비		18,803	18,803				18,803	
시 비	470,448	325,287	317,214	38,073		-30,000	-145,161	
기 타								자부담

## □ 예산 증감사유

-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이 1천만원 이상 사업 잔액 반납
- 사업계획 변경 및 시군종합평가 목표 초과 달성

## □ 법적근거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	제4조 제1항, 제2항
근거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도로명 주소 부여·사용·관리 등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비 확보
-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새주소 사용자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물 확충설치비 확보
- 20년 정부합동평가 지표예정 (도로명판 신규 설치(확충) 관련 예산 확보액 및 집행액)
- 도로명주소안내시설 현장점검 업무의 자동화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명업무 관련 전산소모품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로터 용지 : 44,000원×15롤 = 660</li> <li>- 건물번호판 제작용 반사지 : 675,000원×4롤 = 2,700</li> <li>- 프린터 토너 구입 : 255,000원×2대×7회 = 3,570</li> </ul> </li> <li>시설물 사고 배상보험 자기부담금 100,000원×5회 = 500</li> <li>도로명주소위원 수당 : 80,000원*12명×2회 = 1,920</li> <li>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명 읍면동별 안내지도 제작 = 25,000</li> <li>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 = 40,000</li> <li>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 : 12,000원×750개 = 9,000</li> <li>건물번호판 완제품 구입 : 38,073,000원 = 38,073</li> <li>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용역 : 62,676,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비 : 18,803,000원 =</li> <li>- 시비 : 43,873,000원 = 62,676</li> </ul> </li> </ul> </li> </ul>	(시:도/7:3) 약62,676천원의 70%
	201-02 공공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명주소 민원우편료 : 380원×3,200건 = 1,216</li> <li>스마트 KAIS 단말기 유지비 : 40,000원×12월 = 480</li> </ul>	
	401-01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확충)비 = 130,000</li> <li>-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li> </ul>	특교세포함 10,000천원
도로명주소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308-07 차차단체간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기관별 부담금 16,711,000원 = 16,711</li> </ul>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	308-07 차차단체간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 기관별 부담금 21,584,000원 = 21,584</li> </ul>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명판 확충 568개 - 보행자용 430개, 차량용 138개</li> <li>건물번호판 부여 - 1,649건</li> <li>도로명주소 홍보 실시 25회 - 우체국, 전통시장, 서포터즈 활용 홍보</li> <li>김포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용역 추진(19,719천원)</li> <li>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7,448천원)</li> <li>상세주소 부여 - 271건</li> <li>도로명주소사업 정보시스템 운영(13,418천원)</li> </ul>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명판 확충 428개 - 보행자용 409개, 차량용 19개</li> <li>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163개</li> <li>상세주소 부여 - 201건</li> <li>도로명주소 홍보 실시 20회 - 우체국, 전통시장, 서포터즈 활용 홍보</li> <li>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15,924천원)</li> <li>건물번호 부여 - 1,334건</li> <li>기초번호판 확충 - 60개</li> <li>김포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용역 추진(56,000천원)</li> <li>도로명주소사업 정보시스템 운영(15,990천원)</li> </ul>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명판 확충 - 92,176,300원</li> <li>건물번호판 제작 - 47,073천원</li> <li>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4,104,870원</li> <li>김포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용역 추진 - 53,721천원</li> <li>도로명주소 홍보 실시 20회 - 우체국, 전통시장, 서포터즈 활용 홍보</li> <li>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 - 21,584천원</li> <li>도로명주소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 16,711천원</li> <li>기초번호판 확충 - 11,895,890원</li> <li>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 7,925,360원</li> <li>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 18,300천원</li> </ul>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118,628	114,930		3,698	
2019년	480,448	470,148		10,300	
2020년	354,090	259,792		94,298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장 손동희	담당자	시설7급 신현수 행정9급 이나래	전화	2126 2125
-----	-------	------------	-----	----------------------	----	--------------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P-19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규모 : 351필지, 339,618.2㎡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 재산권 보호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9,339	23,277	4,620			18,657	3,938	
국 비								
도 비								
시 비	19,339	23,277	4,620			18,657	3,938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면적증감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사업완료 시점에 산정이 가능하여 3회 추경에 편성함.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역 연속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를 위한 용역비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근거내용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	계속■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	보조□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가 오해손 및 신축, 토지 이용현황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토지경계와 불일치함에 따라,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면적 및 경계를 현황에 일치시켜 새로운 지적공부로 등록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실시하는 국가사업임.
- 측량비는 전액 국비이나, 운영비는 지자체 자체수립 조건임.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 18,657	
		•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 45,000원×141필지×2회 = 12,690	
		• 연속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용역비 : 17,000원×351필지 = 5,967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10. : 실시계획 공고
- 2018.11. ~ 2019.02. :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 2019.04.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2019.05. :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 선정
- 2019.05. ~ 2019.07. : 토지현황조사 및 현황측량 실시
- 2019.08. ~ 2019.10. : 경계 및 면적조정, 임시경계점 설치(토지소유자 입회)
- 2019.11. ~ 2019.12.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 2020.01.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0.02. ~ 2020.04. : 경계결정통지서 통지, 이의신청접수
- 2020.04.16. : 사업완료 공고, 기존 지적공부 폐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2020.05. ~ 2020.07. : 감정평가 실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조정금 산정
- 2020.08. : 조정금 지급·징수 통지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결산현황

###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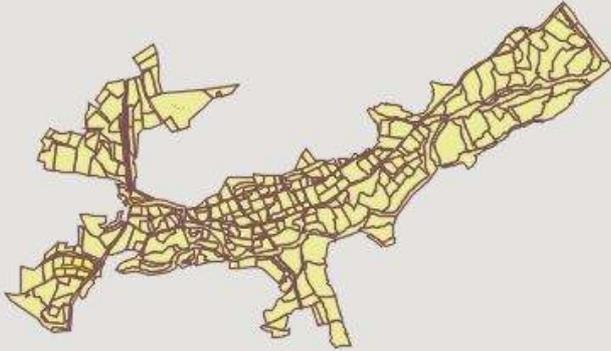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성동지구』: 월곶면 성동리 일원 590필지(403,994.7㎡) - 사업기간 : 2018.04.17. ~ 2019.11.06.	
2019년	『조강지구』: 월곶면 조강리 일원 351필지(339,618.2㎡) - 사업기간 : 2019.04.09 ~ 2020.04.16.	
2020년	『마산지구』: 마산동 일원 85필지(536,259.0㎡) - 사업기간 : 2020.07.30. ~ 2021.12.31. 『포내2지구』: 월곶면 포내리 일원 972필지(679,656.0㎡) - 사업기간 : 2020.01.02. ~ 2021.12.31.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8년	15,669	15,353	0	317	
2019년	19,339	18,348	0	992	
2020년	4,620	3,352	0	1,268	2020. 8. 27. 기준 집행 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이호재	담당자	시설7급 황병우 시설8급 위성은	전화	2130 2129
-----	-------	-------------	-----	----------------------	----	--------------

#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P-19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위 치 :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일원
- 사업규모 : 82필지, 6,388.0㎡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 재산권 보호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b>계</b>	<b>270,000</b>	<b>1,258,578</b>	<b>300,000</b>	<b>11,788</b>		<b>946,790</b>	<b>988,578</b>	
국 비								
도 비								
시 비	270,000	1,258,578	300,000	11,788		946,790	988,578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조강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2020년 4월 16일에 완료됨에 따라 면적이 감소되는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3회추경에 편성함.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근거내용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강지구」가 2020. 4. 16일자로 사업완료 됨에 따라, 새로운 경계확정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되는 필지에 대하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 규정에 의거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함.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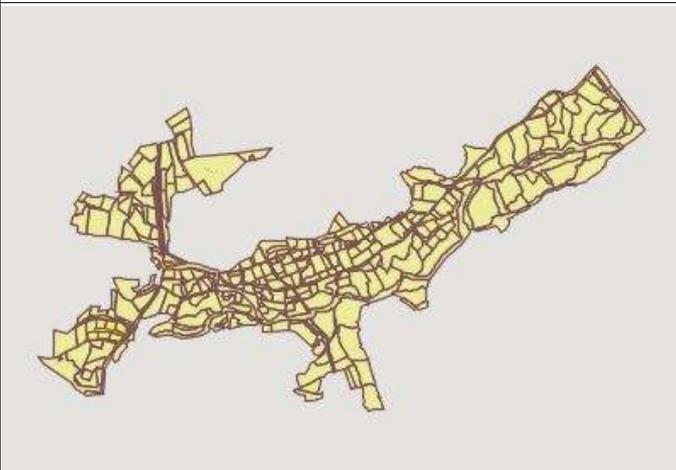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301-12 기타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정금 지급대상 [82필지(6,388.0㎡)]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일 기준 필지별 감소된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금액)</li> </ul>	= 946,790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18.10. : 실시계획 공고
- 2018.11. ~ 2019.02. :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 2019.04.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2019.05. :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 선정
- 2019.05. ~ 2019.07. : 토지현황조사 및 현황측량 실시
- 2019.08. ~ 2019.10. : 경계 및 면적조정, 임시경계점 설치(토지소유자 입회)
- 2019.11. ~ 2019.12.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 2020.01.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0.02. ~ 2020.04. : 경계결정통지서 통지, 이의신청접수
- 2020.04.16. : 사업완료 공고, 기존 지적공부 폐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2020.05. ~ 2020.07. : 감정평가 실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조정금 산정
- 2020.08. : 조정금 지급 징수 통지

□ 위치도 및 현장사진(해당없을시 미제출)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이호재	담당자	시설7급 황병우	전화	2130
				시설8급 위성은		2129

#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P-197)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위 치 : 김포시 마산동 일원 / 월곶면 포내리 일원
- 사업규모 : 85필지, 536,259㎡ / 970필지, 679,656㎡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 재산권 보호
- 예산요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A)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 대비 증감(B-A)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 추경 (E)		
계	60,531	193,726	181,763			11,963	133,195
국 비	60,531	193,726	181,763			11,963	133,195
도 비							
시 비							
기 타							

## □ 예산 증감사유

- 전년대비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어 예산 변경사항 반영.

## □ 법적근거

근거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근거내용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 □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성격		사전절차 이행여부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연·출자 의회의결
경상■	자본□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자체재원□	보조재원■	-	-	-	-	-	-	-

## □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가 오해손 및 신축, 토지 이용현황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토지경계와 불일치함에 따라,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면적 및 경계를 현황에 일치시켜 새로운 지적공부로 등록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실시하는 국가사업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자세하게 작성)	비고
지적재조사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 193,726,000원 = 193,726	국비

□ 사업 추진계획 (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

- 2020.01 :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 지정 검토(시·도 협의)
- 2020.02 : 주민설명회 개최
- 2020.03 :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 선정
- 2020.04~2020.07 : 현황측량 실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 2020.08~2020.09 : 경계 및 면적조정
- 2020.10~2021.02 : 임시경계점 설치(토지소유자 입회)
- 2021.03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2021.04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 2021.05 :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 2021.06~2021.09 : 경계결정통지서 통지, 이의신청접수
- 2021.10~2021.11. : 사업완료 공고, 기존 지적공부 폐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2021.12 : 감정평가 실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조정금 산정
- 2022.01~ : 조정금 지급 징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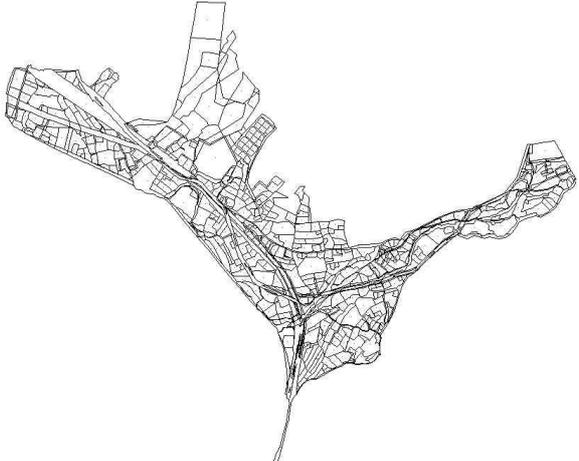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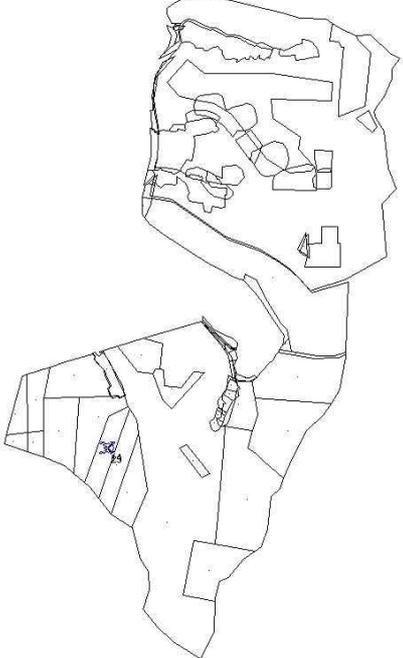
구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	비고
2018년	『성동지구』: 월곶면 성동리 일원 590필지(403,994.7㎡) 사업기간 : 2018.04.17. ~ 2019.11.06.	
2019년	『조강지구』: 월곶면 조강리 일원 351필지(339,618.2㎡) 사업기간 : 2019.04.09. ~ 2020.04.16.	
2020년	『마산지구』: 마산동 일원 85필지(536,259.0㎡) - 사업기간 : 2020.07.30. ~ 2021.12.31. 『포내2지구』: 월곶면 포내리 일원 972필지(679,656.0㎡) - 사업기간 : 2020.01.02. ~ 2021.12.31.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액)	집행잔액	비고
2018년	95,555	95,555	0	0	
2019년	60,531	60,531	0	0	
2020년	193,726	154,981	0	38,745	

□ 위치도 및 현장사진(해당없을시 미제출)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이호재	담당자	시설7급 황병우	전화	2130
				시설8급 위성은		2129